

韓末의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Fisheries Financing of the Late Yi Dynasty

金 敬 浩*

Kyoung-Ho Kim

目 次

I. 序 言	1. 前期의 金融機關
II. 韓末의 漁業事情	2. 水産金融과 前期의 商業資本
1. 漁業의 概觀	3. 水産業과 客主資本
2. 日本漁民과의 關係	V. 漁業資金前貸 및 仕込制度
III. 韓末의 漁業經營形態	VI. 結 言
IV. 開港과 客主制度	Summary

I. 序 言

開港을契機로 하여 그 以前까지 支配되었던 自然經濟가 外來資本主義勢力의 侵入에 의하여 他律的으로 解體過程을 밟으면서 貨幣經濟로 移行되고 商品經濟가 發達하기 始作하였다. 外壓에 의한 變則的인 貨幣經濟에로의 移行 및 商品經濟의 發達은 水産業部門에 있어서도 農民層 分解過程에서 形成된 漁民層內部에 分化를 일으킴으로써 韓末에 이르는 동안에 自然經濟의 副業形態의 漁業을 濃厚하게 殘存시키면서 零細農業과의 緊密한 結合關係를 지니는 小商品生産의 漁業이 廣汎하게 普及되었고 이를 分解의 土壤으로 하여 李朝封建社會의 胎內에서 資本制의 漁業의 萌芽的 形態가 局部的으로나마 生成·發展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韓末에는 原始的인 零細漁業이 大部分이었다고 하겠으나 多分히 前期의 色彩를 띤 比較的 規模가 큰 少數의 資本制의 漁業도 나타났다.

아름은 小商品生産의 漁業이든 資本制의 漁業이든 間에 水産業, 특히 漁業은 自家生産의 漁獲物이 自給食糧의 補充部門의 口實밖에 못하는 原始的인 段階를 벗어난 以後에는 반드시 交換經濟의 性格을 띄게 되므로 이는 貨幣的 需要를 發生시켜 水産資金의 必要性을 한층 더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開港以後 韓末에 이르기까지 水産金融은 水産業者의 貨幣的 需要를 充足시킬만한 低利金融機關같은 것은 없었으므로 資金의 大部分은 高利貸의 形態로 나타났다. 「江華條約締結」以後 一般銀行의 設立에도 不拘하고 當時 近代의 金融機關으로부터의 融資惠澤은 主로 商工業者나 貿易業者에게 置重되었을 뿐 水産業者에게는 極히 例外的인 程度의 額數에 不過하였기 때문에 自己資本의 蓄積과 貸付資本의 確保가 없는 水産業者는 傳統的 金融의 하나인 客主에게 依存할 수밖에 없었

* 釜山女子大學 助教授.

고, 한편 客主는 水産業部門에 있어서 高利貸資本으로 하여금 金融의 主役을 擔當케 된 것이 韓末의 金融實情이라 하겠다.

II. 韓末의 漁業事情

1. 漁業의 概觀

韓末의 漁業에 관해서는 이미 充分한 研究가 되어 있어 詳論할 必要는 없고 여기서는 다만 當時의 漁業事情만 간단히 보기로 한다.

開港以後 韓國漁業部門에 대한 外勢의 侵透로 인하여 韓末에는 水産資源이 多少 減少하는 傾向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近代漁業資本의 水産資源에 대한 威脅이 全般的으로 徹低히 미치지 못한 터라 當時의 水産資源은 沿岸漁業이 飽和狀態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된 現今의 資源量과는 比較도 안될 만큼 豊富하였다.

이와 같이 韓國漁業은 天惠의 自然的 好條件으로 元來부터 水産資源이 豊富하여 黃金漁場으로서의 그 經濟的 價値를 充分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漁具漁法의 未發達, 技術不足, 資本의 劣勢 등으로 後進性을 免치 못하였고, 또한 漁場의 開發度도 極히 낮았다.

韓末 當時 前期의 色彩를 띤 資本制의 漁業은 部分的으로나다 發生·發展하기 始作하였으나 그 大部分은 小商品生産의 零細漁業이 壓倒의이었으며, 이에 따른 漁具漁法은 舊套墨守의인 幼稚한 發展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從來로 本邦人이 使用하는 漁具는 그 種類가 不少하나 그 가운데서 主要한 것은 魚帳 魚箭에 屬하는 各種 漁具와 駐木, 設網, 中船, 弓船, 地曳網, 刺網 등이 다. 그리고 이들 漁具의 構造는 大體로 粗笨하고 또한 그 大部分은 消極的 漁具에 屬하는 것이다. 그러나 地勢 및 潮流를 잘 利用하는 點에 있어서는 잘 發達되어 있다.¹⁾ 「舊來의 漁業은 주로 港灣, 河口 등에서 行해진 結果 그 漁具는 防簾, 魚帳, 擧網, 駐木 등의 定置漁具 및 地曳網, 中船, 引船, 刺網 등의 運用漁具에 不過하고 그 構造 亦是 大體로 粗笨하다²⁾」고 한 것 등에서 미루어 보면 當時의 漁具漁法이 얼마나 幼稚하고 原始的인 것이었나를 充分히 알 수 있다.

「本邦沿岸에 있어서의 普通漁船은 漁業의 種類에 따라 그 構造가 特殊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形狀은 若干 橢圓形이며 肩幅一丈 長三丈三尺 깊이 四尺型의 것이 가장 많고 큰 것이라야 肩幅一丈三, 四尺을 超過하지 않는다. 大概 船內는 五區로 나누나 그 區劃에 칸막이판자를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一旦 海水가 侵入하게 되면 이를 막을 道理가 없으며 또 肋材가 없고 木釘으로써 建造하기 때문에 自然히 脆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船底가 넓기 때문에 船體의 動搖가 적고 매우 浮力이 크다. 特히 附屬具인 키의 構造에 의하여 淺所의 通航에 適合하고 돛의 構造에 의하여 駛走에 便利한 것과 같은 點은 本漁船의 特徵이다³⁾」고 한 바와 같이 當時의 漁船은 매우 脆弱하기 짝이 없

1) 水協中央會, 「韓國水産發達史」, 1966, p. 136.

2) 朝鮮總督府, 「朝鮮の水産業」, 1919, p. 10.

3) 林仁榮, 「李朝魚物屢研究」, 1977, pp. 18-19.

였다고 하겠다.

「朝鮮舊來의 漁業은 그 種類가 30餘種이 있으며 그 中에서 重要한 것은 江原, 慶北, 慶南 및 全南의 벌치地曳網漁業, 同抄網漁業, 咸北咸南의 明太刺網漁業, 同延繩漁業, 咸南慶南의 大口防簾漁業, 同魚帳漁業, 咸南江原慶北의 청어防簾漁業, 同刺網漁業, 慶南全南 및 西海岸의 조기中船漁業 및 갈치一本釣漁業 등이며 其他 沿岸各地에 있어서의 採蠶業, 慶南의 蛸釣 및 전어網船網漁業, 咸南의 도루묵擧網漁業, 平南平北의 새우中船漁業, 全南의 새우弓船漁業, 江原咸南咸北의 이미스刺網漁業 등이 若干 種 類만 한 것이다」.⁴⁾

以上에서 볼 때 當時 各種의 漁具漁法이 採用되고 漁業種類는 무려 30餘種이나 되었으나 그러한 漁具는 沿岸 또는 內灣에 設置하여 來游하는 魚類를 捕獲하는 것으로서 모두 地勢와 潮水의 進退를 利用하는 漁具라는 點에 共通點이 있다. 그러나 韓末에 들어와서 日本通漁民과 移住漁民의 影響을 받아 漁具漁法面에서 日本人의 그것을 模倣하여 韓國舊來의 漁業에 變化가 생기기 始作하였으나 韓國人의 固有漁業에 있어서는 큰 變化없이 如前히 低位段階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아름은 沿岸 또는 內灣에서 地勢, 潮流, 潮水의 干滿을 利用하여 漁獲하는 原始的 漁具와 凌波性이 缺如된 脆弱한 漁船으로서 來游하는 魚類를 捕獲하는 沿岸性의 迂拙한 受動的·靜態的 漁業과 淺海定着性의 貝藻類採捕와 같은 原始的인 零細漁業이 大部分이었고, 比較적으로 發達된 漁業은 數種目에 不過하였다. 問題는 韓末의 水産業이 幼稚한 漁具漁法을 바탕으로 하여 沿岸, 內灣性漁業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⁵⁾

2. 日本漁民과의 關係

韓國과 日本과의 韓海通漁가 合法化된 것은 1883년부터이다. 事實 日本은 明治中期以後 資本主義의 商品生産의 發展에 起因한 都市人口의 集中과 交通의 發達, 清日, 露日 兩戰爭에 따른 軍糧調達 등에서 水産物의 需要는 增大되었으나 漁業生産性은 反對로 低位停滯性을 克服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矛盾은 日本漁業의 間斷없는 海外進出을 刺戟하였다. 開港以後 日本의 韓國에 대한 漁業侵略이 本格的으로 展開되기 始作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開港直後에는 韓日間에 何等의 漁業協定도 締結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日本人의 韓海通漁는 比較的 密漁形態에 지나지 않았으나 1883年 韓日間의 「通商章程」이 締結됨으로써 日本人의 韓海通漁는 合法化된 것이다. 特히 韓海에 대한 日本人의 通漁는 韓末에 가까워 짐에 따라 急速度로 增加하여 日本人의 來漁가 合法化된 때부터 韓日合邦에 이르기까지의 約 30年間은 事實上 日本人이 韓海通漁의 主導權을 掌握하고 있었다.⁶⁾

4) 朝鮮總督府, 「前掲書」, p. 10

5) 林仁榮, 「前掲書」, p. 18.

6) 日本은 露日戰爭以後 韓國에 있어서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인 모든 獨占權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은 將次 殖民地朝鮮을 日本의 資本蓄積을 위해서 合法的 組織的인 漁民收奪을 圖謀키 위하여 韓國政府로부터 漁業權을 確立할 目的으로 土地調査事業의 경우와 같이 沿岸漁場調査부터 먼저 實施할 原則을 세워 이 原則에 立脚하여 日本은 일찍부터 그들의 通漁民이나 또는 그들이 파견한 官吏와 民間인 技師 등으로 하여금 韓國沿岸의 漁場을 徹底히 調査한 것만 보아도 能히 짐작이 간다(經濟評論社, 「韓國經濟百年史」, 1982, p. 280).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日通商章程 第41款은 日本漁船이 韓國의 全羅, 慶尙, 江原, 咸鏡의 4個道 海岸에서 漁業할 수 있고 韓國漁船도 日本의 肥前, 筑前, 石見, 長門, 出雲, 對馬島의 沿岸에서 漁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規定한 것이다. 그 原文은 다음과 같다.

准日本國漁船於朝鮮國全羅慶尙江原咸鏡四道海濱朝鮮國漁船於日本國肥筑前石見長門 對朝鮮海面處 出雲對馬海濱往來捕魚 但不准私將貨物貿易 違者將本貨入官 賣買其所獲魚類 不在此例 至其彼此應納魚稅 及其他細目 俟遵行兩年後 核其情況 稟行妥議酌定⁷⁾

如何間 本通商章程 第41款의 規定은 日本漁民의 韓海通漁權을 合法化한 最初의 協定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韓國人은 이미 日本漁民들 조차도 버리고 온 荒廢된 日本沿岸漁場에 出漁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곳까지 出漁할 能力이 없었던 當時의 韓國漁業의 事情을 감안하면 이 協定은 表面上으로는 互惠의 平等을 假裝하기 위한 것에 不週한 것이었으나 實質的으로는 日本漁民의 一方의인 韓海出漁權을 合法化하려는 不平等協定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韓海通漁權이 合法化되자 日本人은 淸國漁船의 往來가 頻繁하였던 西海岸에서는 淸國과의 衝突을 回避하기 위하여 忠淸道以北의 沿岸(忠淸, 京畿, 黃海, 平安의 四道 沿岸)을 通漁區域에서 除外한 모든 領域에 걸쳐 出漁하였다.⁸⁾

當時 韓海에 來漁한 日本漁民層은 日本의 軍事的 帝國主義的 發展에 對應하여 淸日戰爭後는 主로 韓海에, 露日戰爭後는 露領「사하린」 및 沿海州에 進出한 日本의 外地出漁의 形態는 特技的 工場制 漁業의 軍事的 先行的 發達로 이루어진 捕鯨漁業, 트롤漁業 등 資本制의 漁業經營에 基盤을 둔 近海·遠洋漁業과 沿岸漁業에 基礎를 둔 零細漁民을 主體로 한 季節的인 出稼漁家와의 두가지 形態로 나타났다. 當時 韓海에로의 日本通漁는 少數의 捕鯨을 除外하고는 後者의 形態에 의한 通漁였다. 즉 主로 一漁期一種目を 相對로 한 零細漁民의 出漁였다. 그리고 露日戰爭以後 農業移民과 相互呼應하여 來住한 移民漁民도 零細漁業經營者였다.⁹⁾

韓海出漁民의 出身地는 韓國과 地理的 歷史的 關係가 깊은 西日本에 그 重點이 있었다. 通漁의 重點은 地理的 條件에 의하여 海況 漁況 등의 自然環境이 南西日本과 類似한 南海岸에 있었으며 通漁가 活潑해 짐에 따라 西海岸으로 進出하고 마지막으로 零細漁業으로서는 經營이 困難한 東海岸으로 進出하였으나 依然 通漁의 重點은 全南 및 慶尙南北道에 集中되어 있었다.¹⁰⁾

1876年 江華島條約締結後 14年間 事事件件 日本의 威脅에 놀려 許多한 收益을 許興한 韓國은 再次 日本의 強要로 1889年 11月 全文 12個條로 된 「韓日通漁章程」을 1883年의 韓日通商章程 第41款에 依據하여 調印되었다. 이것 亦是 日本의 壓力에 의해 不得已 締結하였다고 하나 韓國政府는 自國民의 生業을 지극히 粗忽히 取扱하고 韓國 天惠의 寶庫를 日本에 讓步함으로써 結局 韓國漁民의 끝없는 犧牲下에 日本의 資本蓄積에 至大한 貢獻을 하게 된 셈이다. 그리하여 이 條約이 締結된 直後는

7) 朴九秉, 「韓日近代漁業關係研究」, 釜山水大研究報告 7卷, 1號, 1967, p. 6.

8) 當時 日本漁船이 가장 많이 來漁하던 곳은 西日本과 距離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西日本과 自然的 條件의 類似性을 지니고 있었던 南海岸一帶였으므로 忠淸道以北 漁場의 除外는 日本側으로서는 그다지 큰 不便을 느끼지 않은 일이었다(朴九秉, 「前揭論文」, pp. 6-7).

9) 水協中央會, 「前揭書」, pp. 304-322 參照.

10) 上同.

日本의 韓國 沿岸出漁는 오히려 減少하였다.¹¹⁾ 그後 日本資本主義의 外延的 成長이 進行됨에 따라 이의 比例的으로 半漁半賊의 性格을 띤 日本人의 韓國沿岸에의 進出이 해마다 激增하였다.¹²⁾

그런데 韓國은 漁船의 勢力面에서나 從業員數에 있어서 日本에 比하여 越等히 높은 데도 不拘하고 漁獲高는 오히려 그 反對였다.¹³⁾ 이는 다같은 零細規模의 經營이라고는 하나 漁具漁法의 能率面에 差가 많았던 것과 또한 韓國人의 大多數는 보다 零細한 原始的 漁業에 從事하고 있었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商品生産의 發達과 더불어 大規模化한 一部 漁業도 으로지 勞動의 集積이란 方向으로 向하고 生産手段의 大規模化는 生産手段體系에 있어서의 内部的 分業을 基礎로 한 大規模化가 아닌 單純한 勞動手段의 累加的 大規模化로 나아갔던 것이다. 結局 韓日合邦에까지 全般的으로는 刮目할 만한 技術的 發展없이 非能率的인 在來式 漁具漁法이 그의 原型 그대로 繼承되었다.

Ⅲ. 韓末의 漁業經營形態

韓末의 漁業經營形態는 現今의 發達한 資本制漁業에서 볼 수 있는 大量의 生産手段을 集中하여 多數의 漁業勞動을 雇傭하는 會社經營의 對極인 零細한 生産手段과 家族勞動에 의한 漁家經營이 支配적이었던 것은 論議할 必要가 없으나 이 兩者의 中間的인 存在인 個人經營 및 共同經營도 同時에 混在하고 있었다.¹⁴⁾ 이 中에서도 이 時代의 獨特한 特殊性을 지닌 漁業經營으로서 注目할 것은 共同經營形態이다.

勿論 家族勞動에 의한 零細規模의 漁家經營이 可能한 漁業은 主로 自然經濟에 있어서의 自給食糧供給의 意義 밖에 지니지 않았으나,¹⁵⁾ 共同經營의 경우는 家族勞動의 範圍를 벗어나 多數 漁夫의 協業에 의한 集團操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比較的으로 規模가 큰 漁業種目이었다. 이러한 漁業은 漁村共同體의 血緣的, 地緣的 緣故關係와 生産手段의 共有를 媒介로 한 小生産者의 橫的 協同에 의하여 行해지는 共同經營形態로 營爲되었다. 共同出資, 共同出役, 共同分配의 典型的인 共同經營形態로써 韓末까지 남아있는 것 중 揮羅網 및 이의 變種인 防陣網漁業을 보면 「揮羅網(후리그물) 및 防陣網에 있어서는 一個人의 營業에 屬하는 것은 極히 드물고 大概 모두가 數十人에 의하여 成立된 組合組織으로서 組合員은 大部分 恒常 漁業에 從事하는 것이 아니고 單只 本漁業에 限하여 一時 關興하는데 不過하다. 組織은 아주 完備되어 組長과 副組長이 있으며 組長은 都家라고 하고 漁業에 관한 一切의 일을 處決한다. 都家 밑에는 所任이라고 하는 者が 있는데 이는, 卽 副組長

11) 1930년에는 通漁船總數가 718隻이었던 것이 1891年과 1892년에는 各各 그 數가 오히려 611隻, 683隻으로 減少되었다. 이것은 通漁章程 締結直後에는 比較的 正常的인 漁撈行爲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朴壽伊, 「李朝貿易政策論攷」, 1974, pp. 530-531).

12) 上同, p. 531 및 朴九秉, 「韓國漁業技術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大系 Ⅲ, 1968, p. 257 參照.

13) 上同.

14) 韓末에 이르러……一方에서는 漁業의 個人經營 또는 共同經營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組合形式의 漁業도 생기곤 하였다(林仁榮, 「前揭書」, p. 25).

15) (忠南庇仁郡)魚箭은 前面 遠淺한 海中에 設置하는 것으로서 乾防簾 5個所가 있다. (中略) 石防簾은 村內 老少가 娛樂的으로 經營하는 것으로서 雜魚를 漁獲하여 自家食糧으로 삼는데 不過하다(「韓國水産誌」, 第3輯, 1910, p. 674).

으로서 恒常 都家를 補佐하고(中略) 網地를 購入코자 할 때는 都家は 所任과 함께 數人의 組合員을 同伴하며, 歸村後 이를 網으로 製作할 때는 所任을 通하여 組合員의 來集을 命하고 淨子(부이, 틸) 藁繩 등 漁網을 製作하는데 要하는 物品을 各者 持參케 한다. 各者가 持參해야 할 物品의 數量은 미리 相議하여 定하여 둔다. 漁獲物은 都家の 指示에 따라 生鮮을 直接 組合員에게 等分하는 수도 있고 或은 生鮮 그대로 또는 乾燥시켜 商人에게 賣渡하여 그 所得을 組合員에게 等分하는 수도 있다. (中略) 漁業에 所要되는 資金은 大概 漁業者 自身이 物品과 努力을 供給하기 때문에 實際로 現金의 支出을 要하는 것은 網地와 漁船뿐이다. 그리고 이 資金은 組合組織에 있어서는 組合員 各者가 釀出하는 것이지만 萬若 現金이 不足할 때는 다른 곳에서 借入하여 이를 支出한다.¹⁶⁾

元來 漁業은 生産過程에서 二重의 意義의 Critical period한 性質(魚群이 群衆體를 形成하여 洄游하는 漁期에 있어서의 Critical period 및 速泳力이 있는 魚群을 發見했을 때의 Critical moment)에 의하여 極히 初期의 發達段階에 있어서도 技術過程의 協業化를 惹起시키고 促進하는 것이므로 漁業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集團操業을 하는 것이 많았다. 이러한 境遇에는 零細漁民이 橫的 結合에 의한 共同經營形態를 取하는 것이 一般의이었을 것은 能히 推測할 수 있다.

또한 韓末에 있어서의 自然經濟的 副業漁業을 濃厚하게 殘存시키면서 零細農家와의 緊密한 結合關係를 지니는 小商品生産的 漁業이 廣汎하게 普及되었고 이를 分解의 土壤으로 하여 封建社會의 殆內에서 資本制的 漁業의 端緒的 形態가 部分的으로나마 生成·發展되어 가는 例를 보면 「(明太漁業)은 一人의 營業主下에 給料로써 雇傭된 漁夫에 의하여 行해지는 것으로서 他漁業에 있어서와 같이 「步合法」, 或은 「合資法」 등에 의한 것은 없다. 給料은 一漁期(約 2個月半) 22圓 50錢~36圓이며 雇傭中에는 담배, 靚衫, 防寒具 등을 雇主가 支給한다」,¹⁷⁾ 「(大口漁業) 熊川, 固城附近에 있어서는 給料를 支拂하여 漁夫를 雇傭하고 豐漁時에단 別途로 若干의 配當을 한다. 釜山 및 蔚山灣에 있어서는 漁獲高의 一割을 漁夫에게 配當하고 그 殘額에서 營業費 一切를 除去한 것을 帳主가 取得한다. (中略) 漁夫는 各地로부터의 出稼人으로서 每年 漁期가 到來하면 四方에서 來集하여 營業者의 雇傭을 기다린다. 淨帳 및 大魚帳에 있어서는 一名當 一貫文 乃至 五貫文의 前貸를 하여 漁夫長을 雇傭한다. 漁夫長은 多年間 魚帳에 從事하여 斯業에 대한 充分한 經驗이 있는 者로서 漁期中에는 雇傭主를 代身하여 指揮 監督을 하고 漁事 一切를 掌握한다. 그러므로 雇傭主는 이를 厚히 待遇한다」.¹⁸⁾

이와 같이 漁業이 商品生産으로서 定立하면 그것은 二重의 意義의 Critical한 性質로 인하여 더욱 協業化되어 간다. 그리고 協業을 必至化하는 技術的 要因은 生産手段의 大型化와의 要因이 된다. 勞動手段의 大規模化의 要請은 小漁民과 勞動手段製作과의 緊密한 結合을 弛緩시키고 從來 오로지 自家原料로서 自家에서 製作되고 있던 網具, 釣漁具, 漁船 등의 勞動手段의 自給을 貨幣에 의한 購買로 代替시킨다. 小漁民이 漸次 勞動手段의 自給이 不可能하게 되고 貨幣로서 購買하지 않으면 그것을 所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富裕한 漁民層속에서 貨幣를 所持하고 生産手段을 購入할 수 있는

16) 金仁台·朴九乘, 「水産經濟論」, 1963, pp. 119-120.

17) 上同, p. 178.

18) 上同, p. 179.

漁業生産手段의 所有者인 網主·船主階層이 發生成立하게 되고 下部漁民層에서 生産手段을 喪失하고 小商品生産者의 地位에서 脱落한 漁業勞動者가 發生한다. 다른아닌 漁民層의 分解를 意味하는 것이며 船主·網主에 의한 漁業經營形態의 發生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經營形態의 漁業은 이미 家族勞動을 基盤으로 한 漁業, 즉 小商品生産(單純商品生産)的 漁業이 아니고 歷史上 單純商品生産이 資本制生産에 傳化한 最初의 形態로서의 Manufacture 段階에 該當하는 漁業이라고도 할 수 있는 資本制漁業經營의 端緒的 形態라는데 特異성이 認定되는 것이다.

以上の 例以外에도 當時 各種의 共同經營의 形態가 많이 存在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共同經營形態가 많았던 것은 當時의 漁業經營形態의 特性이며, 그것은 前期的 金融制度를 理解함에 있어서 重要な 意義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Ⅳ. 開港과 客主制度

1. 前期的 金融機關

韓末의 韓國經濟를 日本의 福田德四博士는 Bücher의 經濟發展段階說에 適用하여 自給自足經濟의 一種인 借金の 自立經濟라고 規定하고 있다.¹⁹⁾ 그에 의하면 韓國經濟는 아직 所謂 都市經濟하고 불리우는 經濟發展段階에는 到達하지 않고, 따라서 商工業의 社會的 分業도 存在하지 않는 自然經濟에서 貨幣經濟에의 過渡期的 時代라고 한다.²⁰⁾

當時 韓國의 製造業에 관해서 「韓國은 아직 家族經濟의 範圍를 脫皮하지 않고 分業의 方法에 의하는 것도 매우 限定되어 生活必需品은 大概 家族勞動에 의해서 모든 것이 準備되고 耕作되어 穀菜를 收穫함과 同時에 日用品의 原料까지 아울러 製作하고 그 위에 主婦, 家女 및 奴隸는 始終 紡績, 染色, 裁縫에 奔忙하여 男子는 家長의 指示를 받아 家事의 必要에 應하는 同時에 耕作, 染職, 木工 및 石工 등에 從事하고 酒類의 製造, 染料의 製造, 신발과 家具, 農具의 製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턱을 넘지 않고 이를 準備하는 것을 常例로 하고…」,²¹⁾ 「朝鮮末의 工業은 매우 幼稚하였으며, 大部分의 生活必需品은 家內工業의 製品이었으며, 이 무렵에는 近代의 工業도, 分業도 없었다. 다만 國內에서 生産할 수 없는 것(例, 石油, 砂糖 등)과 國內에서 生産할 수 있되 매우 不利한 것만을 輸入하여 使用 또는 消費하는 形便이었다.»²²⁾라고 한 것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當時 韓國의 工業生産력이 低位水準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事情은 비단 農業이나 水産業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니었다. 當時의 「生産은 尙今도 中世의인 零細耕作과 家內手工業의 段階를 脫皮하지 못하고 資本主義的인 社會的 生産力의 要素는 아직 萌芽조차 볼 수 없는 狀態였다」²³⁾고 한다.

19) 金仁台, 「韓國의 水産金融制度에 관한 研究」, 釜山水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編) 第3輯, 1969, p. 2 參照.

20) 上同, pp. 2-3.

21) 上同, p. 3.

22) 經濟評論社, 「前掲書」, 1982, p. 55.

23) 上同, p. 54.

이와 같이 韓末의 經濟가 自然經濟를 完全히 脫皮치 못한 狀態에 있었고, 이는 商品經濟의 發達을 遲延시켜 그 結果로서 貨幣經濟의 發達도 自然히 늦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貨幣經濟體制가 一般化되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前期的 金融機關이 金融的 機能을 擔當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 前期的 金融機關의 業務內容을 大略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客主와 旅閣은 委託販賣業, 都賣業, 倉庫業, 運送業, 宿泊業 등을 營業으로 하는 것 以外에 金融業도 兼하고 있었다. 이들은 貨物을 擔保로 金錢의 貸付, 어음의 發行 및 引受 등을 해 줄 뿐만 아니라 信用있는 客主와 旅閣의 어음은 이미 契約되어 있는 各地에서는 貨幣로 交換할 수 있어 이 어음은 一種의 換이나 信用狀의 役割을 하였다. 그리고 客主와 旅閣은 一般商人이나 王室, 兩班階級 등의 一時的 遊休資金을 保管하여 利息을 붙여주는 所謂 私的 豫金機關의 役割도 擔當하였고, 특히 王室에 대해서는 오늘의 金融機關에 해당하는 外劃制度에 의해서 國庫의 役割도 擔當하였다.

時邊은 開城商人들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協同精神과 信用을 生命과 같이 重要視하는 商道徳을 背景으로 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는 開城地方의 商人間에 行하여진 一種의 貸金業으로서 換錢居間에 의하여 落邊이라는 金利計算法으로 無擔保로 資金의 貸借이 이루어지는 特殊金融機構 즉 落邊이라는 特殊한 金利밑에서 資金의 貸與者와 借用者 사이에 단지 換錢居間을 通하여 아무런 擔保 없이 極히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短期資金을 去來하는 開城商人의 獨特한 金融機關이다. 落邊은 利率이 月利로 되어 있기 때문에 月中間에 貸借契約이 이루어지는 境遇 4日 또는 5日마다 利率을 二厘五毛씩 低下시켜 26日以後에는 그달의 利子를 붙이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當座 或은 普通豫金制度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外劃制度는 郡守에 대해서 그 徵收한 稅金을 國庫에 納付하기 前에 直接 第三者에게 納付하라는 度支部大臣의 命令을 말한다. 이 外劃制度에 의하여 官廳間이나 또는 中央과 地方間의 資金流通이 可能하였으며 一種의 換機關을 遂行하였다. 이 制度는 全國적으로 金融이 잘 疏通되지 못하고 있었을 當時에 中央과 地方 그리고 地方과 地方사이의 金融을 疏通시키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開港以後인 光武 9年(1905年) 國庫制度가 確立되어 郡守가 稅金을 徵收하지 못하게 되자 없어지고 말았다.

끝으로 契는 官權의 強大와 橫暴, 財政의 紊亂으로 一般國民에 대한 無慈悲한 收奪과 한편으로는 天災地變이나 生業에 對備하여 隣人과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形成된 것이다. 즉 納稅目的의 契, 利殖目的의 契, 共同生活目的의 契, 共同購入을 위한 契, 冠婚喪祭를 위한 契 등이다. 특히 利息을 目的으로 하는 契와 共同購入을 目的으로 한 契는 生産活動을 促進시켰다고 하겠다.

要컨대 오늘날까지 一部 傳來되고 있는 契는 우리 民族의 固有한 것으로 그 發生이 오래된 것은 틀림이 없다. 이 以外에도 典當業을 들 수 있다. 貨幣經濟的 典當業이 盛行하게 된 것은 高宗 31年의 典賣有違律과 光武 2年의 典當舖細則이 各各 施行되면서부터 이다. 當時의 典當業은 動産, 不動産 등 區別없이 廣範圍한 營業을 行하였으며, 金融上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以上에서 본 朝鮮在來의 舊來의 金融機關 中에서 水産業과 가장 깊은 關係를 맺어 온 것은 客主와 旅閣이었다. 이들은 大概 高利貸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는 封建的 零細生産을 파괴하는 結果를 가져왔을 뿐 資本의 蓄積이나 經濟發展에는 寄與한 바가 적었다고 하겠다. 아뭏든 이러

한 狀況下에서 開港以後 日人系 銀行의 韓國進出이 너무나 急速히 이루어졌던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水産金融과 前期的 商業資本

歷史的으로 보아서 韓國에 近代的인 金融制度和 金融機關이 制定 乃至 設立된 것은 江華島條約의 締結 後인 1878年 6월에 日本人에 의한 第一銀行 釜山支店의 設立이 그 嚆矢이다. 그 後 對日交易의 增加로 第一銀行의 支店網이 擴大됨은 勿論 日本의 第18銀行, 第58銀行 등이 連이어 上陸하였다.

韓國人側의 近代的인 金融機關으로서는 1894年 「甲午更張」以後 朝鮮銀行, 韓城銀行, 帝國銀行 등이 設立되기는 하였으나 겨우 資本主義의 初期段階에 들어선 데 不過한 當時의 韓國經濟의 實情으로 말미암아 資本과 經驗의 不足, 利用의 低調로 인하여 閉店되고, 大韓天一銀行, 漢城銀行, 韓一銀行이 營業을 繼續하여 그 後 組織의 變更 등을 通하여 오늘의 商業銀行과 朝興銀行으로 發展하였을 뿐이다.²⁴⁾

이와 같이 近代的 金融機關의 設立에도 不拘하고 이들로부터의 融資惠擇은 주로 資力과 擔保能力이 있는 一般工業者나 貿易業者에게 置重되었을 뿐 水産業者에게는 全히 惠擇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韓國農漁村의 前期的 經營構造를 打破하고 資本制의 商品生産과 貨幣經濟를 浸透시켜 農漁村經濟를 資本主義經濟體制에 再編成하기 위하여 農業資本의 供給을 擔當하는 金融機關의 設立이 要請되었다. 여기에 이러한 要請에 따라 設立된 것이 1906年의 「農業銀行條例」에 따라 發足된 農業銀行이며, 1907年에는 「地方金融組合令」에 의한 金融組合이 發足되었다.²⁵⁾ 다시 1908年에는 「東洋拓殖株式會社法」이 公布되어 東洋拓殖會社가 發足하였다. 그러므로 農業銀行과 金融組合, 東洋拓殖會社의 三機關이 주로 農業金融을 擔當하는 農業信用制度의 支柱가 되었으나 여기에서 얻어지는 水産金融은 미미한 金額이었다. 이는 1910年代末의 資金實態만 보아도 能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朝鮮에 있어서의 大正 元年(1912年)의 漁業投資額은 漁船 157萬圓, 漁具 165萬8千圓, 運轉資金 95萬2千圓, 合計 427萬圓에 不過하였으나, 大正 8年(1919)中の 漁業投資額은 漁船 1,113萬9千圓, 漁具 1,081萬7千圓, 運轉資金 651萬8千圓, 合計 2,847萬5千圓의 巨額에 達하였다. 그 가운데 經營者 自身이 投資한 것이 1,139萬5千圓이고, 他處에서 借入한 것이 1,707萬9千圓인데 이 가운데 141萬8千圓은 殖産銀行, 東拓會社, 朝鮮銀行 및 朝鮮內魚市場이 貸出한 것으로서 低利資金이라고 할 수 있으나 526萬5千圓은 日本에 主根據를 지니는 魚類輸送販賣業者가 貸出한 것으로서 漁獲物의 買收를 條件으로 한 것이며, 이들은 大概 無利息貸付를 標榜하나 그 魚獲物은 下關市場의 時價에 比하여 언제나 3分の1 内外의 廉價로 去來되는 實況이다. 또 그 以外の 1,039萬5千圓은 오로지 朝鮮內의 水産物客主業 및 地方貸金業者가 貸出한 것으로서 年 3割 以上の 高利로 借用하고 게다가 그 漁獲物은 時價에 比하여 顯著하게 廉價로 引受하는 것이 常例이며, 이를 積算할 때는 借入金額에

24) 林苗民, 「韓國의 銀行史」, 1963, pp.33-35.

25) 朴東奎, 「農業金融」, 1965, pp.118-127.

대하여 적어도 5割 以上の 高利를 支拂하게 되어 그 負擔은 決코 가엾지 않다. 朝鮮産業에 관한 特殊金融機關이 産業資金으로서 放出한 大正 8年(1919年)末의 現在高를 表示하던 株式會社殖産銀行 7,018萬3千圓, 東洋拓殖株式會社 3,779萬9千圓, 金融組合 2,300萬7千圓, 總額 1億3,090萬圓으로서 이를 用途別로 보던 農業資金 8,077萬圓, 商業資金 4,248萬2千圓, 工業資金 308萬圓, 鑛業資金 352萬8千圓, 水産資金 12萬9千圓으로서, 水産資金으로서 貸出된 것은 겨우 總額의 100分の 1에 도 未達하는 狀況이다.²⁶⁾

그런데 水産業者는 自己의 勞動生産物의 一部를 家計消費와 再生産活動에 充當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生産物의 販賣代金으로 家計를 維持하는 한편 生産活動에 必要한 各種 生産手段을 購入하여 다시 再生産活動을 한다. 이와 같이 水産業者 亦是 經營과 家計를 營爲하는데 있어서는 不可避의으로 一定한 資金이 必要하게 되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事實 自給自足的인 自然經濟時代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生産의 目的이 自己消費였고, 그것이 進展되어 物物交換時代에 들어와서는 物品과 物品과의 直接的인 交換에 그쳤기 때문에 交換手段으로서의 貨幣는 存在치 않는다. 따라서 資金의 需要도 있을리 萬無하며 또한 水産金融問題도 發生할 수가 없는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國民經濟가 貨幣經濟, 信用經濟로 發展함에 따라 自己가 必要로 하는 財貨는 大部分 交換에서 얻어야 한다. 自己가 일해서 消費物資를 直接 生産하여 얻는 範圍란 極히 制限되어 있다.²⁷⁾ 이러한 段階에서 自己가 必要한 各種 生産用役을 自己의 貨幣所得에서 購入하여 自己의 生産에 充當해야 함으로 항상 資金이 必要하다. 이 資金의 必要 現象이 發生되던 金融에 의한 資金의 需給이 自然히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貨幣經濟 및 信用經濟의 發達에 따라 水産資金의 必要性도 漸次 增大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商工業의 發達は 水産業者의 外部로부터의 財貨調達을 더욱 促進시킨다. 自給自足の 時代로부터 商品生産이 發達되어 生産活動을 위한 生産手段 및 各種 資材, 또는 生活資料를 他人의 生産物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貨幣經濟社會에 있어서는 어떤 種類의 生産이든 消費이든 間에 이를 購入키 위해서는 一定한 資金이 所要된다. 그러므로 水産業者는 生産에 專念하게 되고, 또 그것을 合理化해서 많은 貨幣所得을 얻는데 그들의 目的을 두게 되어 資金의 必要度는 더 한층 높게 되는 것이다. 허나 水産業者는 自己資本의 蓄積과 貸付資本의 確保가 없는 限 이들 所要資金의 不足類은 다른 方法에서 求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 水産金融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다.

그런데 水産業, 特히 漁業은 生産의 場所가 水界이고 勞動對象의 大部分이 移動性動物이라고 하는 自然的 條件이 生産을 不確實케 하고 水産經營의 不安定性을 完全히 除去할 수 없게 한다. 게다가 水産物의 商品의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投機的 産業으로서의 性格을 蟬脱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非資本制의 漁業의 特有한 性格으로 말미암아 水産金融이 一般金融에 比하여 相異한 性質을 가지게 된다. 貸付資本은 原則的으로 利潤發生이 確實하고 安全한 産業部門에 集中하므로 水産業에서는 資金流入을 困難케 한다. 特히 大部分의 漁業을 非資本制의 生産方法에 의해 營爲하

26) 朝鮮總督府, 「朝鮮의 水産業」, 1921, pp. 19-20 參照.

27) 金潤煥, 「新經濟原論」, 1973, p. 219.

는 漁家에는 貸付資本의 流入은 極히 制限된다.²⁸⁾ 그러나 市場經濟를 前提로 限 資本主義經濟下에 生産을 營爲한다는 것은 不可避的으로 一定資金을 必要로 하나 自己貯蓄力이 薄弱하였던 水産業者는 自己資金으로 充當될 수 없는 部分을 借入金으로써 補充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 水産業의 構造的 特質때문에 存在할 수 있는 것이 所謂 前期的 商業資本이다. 이것은 普通 前期的 商業資本家에 의해서 商品의 去來와 高利貸資本의 去來라는 二重的 機能을 同時的으로 遂行하게 된다.²⁹⁾ 이러한 前期的 商業資本은 歷史的 社會經濟的 發展段階로 보아서 資本制的 生産方法이 未發達한 生産部門에다 그의 存立基盤을 두고 있으며, 貨幣를 一時的으로 貸付하여 그 使用에 대한 代價를 받는다는 點에서는 近代의 貸付資本과 相異할 바 없다. 다만 近代의 貸付資本에 대한 利子의 源泉은 産業資本으로서 그 生産過程에서 發生하는 價値增殖部分인 利潤의 一部에 있으나, 高利貸資本은 借主의 全生産物에서 그 生産資料를 控除한 殘餘部分 全部에 두고 있다. 이리하여 擴大再生産을 위한 資本蓄積의 餘地는 없어지고 經營規模는 더욱 零細하여 結局 低生産力을 가져오고, 低生産力은 低所得을 結果하며, 또한 流通過程에 있어서 缺狀價格으로 말미암아 經營規模의 零細性을 一層 強化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이 바로 水産經濟의 低位停滯性을 規制하는 커다란 要因이 되는 것이다.

3. 水産業과 客主資本

客主의 起源에 관한 定說은 없다. 다만 文獻에서 客主의 起源을 新羅統一時代로 推定하는 說³⁰⁾도 있는가 하면 高麗發生說을 有力視하는 者³¹⁾도 있고 한편 李朝說을 主張하는 見解³²⁾도 없지 않다.

元來 客主는 國家의 制度로서 發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商慣習으로서 自然的 發達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 起源이 언제부터 인지는 確實히 알 수는 없으나 近代에 있는 것이 아님은 分明하다.

그리고 客主는 一般的으로 「客商主人」을 뜻하며, 여기서 主人이란 周旋하는 사람을 가리킨다.³³⁾ 이들의 本業은 商品의 賣買가 主機能이고 그 밖에 委託販賣業, 金融業, 倉庫業, 運送業, 宿泊業 등의 複雜한 機能을 同時에 兼하고 있었다. 「客主 및 旅閣은 地方의 生産者 또는 商人들이 가져온 物資, 或은 送達된 物資를 需要者에게 販賣함을 本業으로 하는 것으로 都賣業, 倉庫業, 委託販賣業, 運送業 등을 兼하였으며, 또한 金融業도 代行하였다」³⁴⁾고 한 것을 보아도 客主는 主機能인 商品의 賣買 以外에 保管業(一種의 倉庫業), 運送業, 金融業등 廣範한 範圍에 걸쳐서까지 그 機能을 兼한 것이었다.

28) 資本制限은 經濟的 不安定으로 말미암아 漁業者 自身の 消極的 保守的인 事業計劃에 의한 借入의 抑制 또는 自制에서 오는 內的制限과 追加資金의 借入을 希望하여도 金融機關이 元利金償還의 不確實性으로 말미암아 應할 수 없는 外的制限이 있으나 如何든 이와 같은 資本制限現象을 漁業의 經濟的 不安定 즉 漁業生産의 不確實性으로 인하여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29) 文定昌, 「朝鮮의 市場」, p. 31.

30) 崔虎鎮, 「近代朝鮮經濟史」, 1942, p. 29.

31) 朝鮮總督府, 「朝鮮人の商業」, 1925, p. 69 및 朴元善, 「客主」, 1968, p. 9.

32) 平凡社, 「東洋歷史事典」, 1938, p. 470.

33) 朝鮮總督府, 「前掲書」, p. 67 및 朴元善, 「前掲書」, p. 46.

34) 鈴木武雄, 「朝鮮金融論十講」, 1940, p. 74.

이와 같이 客主·旅閩이 主機能 以外에 雜多한 附隨的 機能을 不透明하게 同時的으로 兼하고 있었던 것은 流通經濟의 未發達, 交通의 不便등 李朝封建社會의 社會經濟的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當時의 商業이 運送, 貯藏, 金融, 旅宿業 및 其他 諸業種과 密接한 關係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³⁵⁾

그런데 이들은 李朝時代에 있어서 商品流通機關으로서 大端히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通貨制度가 未發達된 當時에 金融機關으로서의 그 一翼을 擔當하기도 하였다.

客主의 活動은 朝鮮朝最後期인 韓末에 이르러 絶頂에 達했으며, 特히 「客主와 旅閩은 有浦有主 一世之通規라 하여 全國의 交易浦口에는 으레 이들이 常駐하게 마련이었고, 이들은 內陸의 重要 鄕市에까지 進出하여 物貨를 蒐集販賣하고 있어 開港前의 商業界에서는 客主·旅閩은 商去來의 主役을 擔當하였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³⁶⁾고 한 바와 같이 開港以前의 朝鮮時代까지는 各 地方의 商業中心地에서 發達하였지만 開港以後에는 各開港場의 外商과 去來를 하는 등 商業에서 比較的 重要的 役割을 하였다. 그리고 開港 當時 客主의 勢力은 正確히는 알 수 없으나 1889年 釜山港의 客主는 44名이었고, 釜山을 中心한 地域의 客主數는 160名을 헤아릴 수 있었으며, 仁川港의 境遇는 1893年에 官指定 客主를 20名으로 制限하려 할 때 26名이 落窠(指定에서 脱落)된 것을 보면 그 數가 46名이었으리라고 생각되며, 元山港은 이보다 적었을 것으로 推測된다.³⁷⁾

要컨대 客主는 「本邦에 있어서의 唯一한 販賣機關으로서 各地集散의 便利한 場所에는 그것이 開設 안 된 곳이 없으며 重要市街 또는 要港에는 數十 또는 十數戶의 同業者가 있다. 그 業態는 各種 物品의 都賣, 委託販賣業, 仲買이고, 또 銀行業 및 兩替業도 兼한다」³⁸⁾고 한 바와 같이 이들의 活動이 大端히 活潑하였다.

여기에서 水産業 分野에 있어서 客主의 活動을 보면 「客主·旅閩의 漁業方面과의 關聯性을 보면 漁獲物의 集散地, 즉 出買船의 根據地에는 옛날부터 客主가 存在하였으며 魚類의 委託販賣, 運搬業者에 대한 資金貸付, 水産關係者를 宿泊시켜 去來仲介의 便宜를 圖謀하고 漁獲物의 保管도 맡아서 하는 등, 主로 水産物의 去來나 資金面에 直接 重大한 關係가 있었다. 麻浦, 黃江浦, 馬山, 江景 등은 古來로 本據地이며, 特히 麻浦에서는 韓末에 約 30名의 客主가 있었고 朝鮮最大의 根據地로서 最近까지 그 傳統을 이어 왔으나 太平洋戰爭에 의하여 會社組織이 되고 舊來의 客主制는 變貌했다. (中略) 古來로 朝鮮에 있어서의 魚類去來의 最大中心地는 元山, 馬山, 江景의 三港이었다. 이 三港은 朝鮮의 三海區를 各各 代表하는 集散地인 同時에 取扱하는 魚類를 달리하고 또 그 處理面에도 特色이 보인다. 즉 東海區의 代表魚類인 明太의 去來地는 元山이고, 馬山은 南海區의 대구, 청어, 멸치를 江景은 西海岸의 代表魚인 조기를 主로 取扱하였다.

馬山은 東西兩海區의 中央에 位置하는 關係上 取扱魚類의 主體는 南海岸産에 두면서 다시 東西兩海岸産의 것까지도 消化한 것은 그 特色이다. 그리하여 韓末에는 30戶의 客商이 櫛比하여 年間去來高는 百萬圓에까지 達했다고 한다. (中略) 江景에 있어서의 魚類集散狀況은 年間 平均 約 38萬圓, 그 4割은 조기이며 2割은 갈치였다. 그리고 當時의 集荷物은 大部分 朝鮮人이 漁獲한 것으로서 江

35) 崔虎鎮, 「前揭書」, p. 20.

36) 趙璣濬,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1981, p. 267.

37) 韓治勛,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1970, p. 182.

38) 朴九秉, 「韓國水産業史」, 1966, p. 185.

韓末의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景 12戶의 客主가 이를 處理했다. 이곳의 客主는 魚類專門의 것이 아니고 穀類, 雜貨를 兼營하는 것이었다.³⁹⁾ 또 「東海岸의 明太의 集散地인 元山에서는 韓末에 客主가 約 70戶 있었는데 各客主가 每 1年間に 取扱한 水産物의 價額은 約 35萬圓에 達했다고 한다」.⁴⁰⁾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客主는 水産物委託販賣 및 保管, 資金貸與, 宿泊 등의 諸機能을 同時に 兼有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水産業에 있어서 客主는 純粹한 商人으로서 만이 機能한 것이 아니고 보통 商人인 同時に 高利貸金業者, 倉庫業者, 加工業者 등 二重, 三重 때로는 數種의 機能을 兼하는 것이 事實上的 實態였다고 하겠다. 특히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馬山客主가 取扱한 年間 去來額이 百萬圓에 達했다고 하는 事實인데 이는 當時 首位를 차지하고 있었던 明太生産物이 年間 80餘萬圓이었다는 것과 對比해 보면 上記한 去來額은 誇張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는 하나 當時 客主의 水産物去來額이 巨額에 達했던 것만은 事實이었던 것 같다. 客主가 取扱한 商品은 勿論 水産物만은 아니었고 各種의 商品을 取扱하고 있었으나, 특히 水産物은 流通過程에 있어서 客主에의 依存도가 높았다. 水産物은 一般工產品에 比하여 極히 變質 腐敗하기 쉬운 商品的 特性, 즉 自然的 屬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商品適性이 缺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農業生産物인 米麥처럼 一次的 必需品이 아닌 것이므로 漁民의 自給도가 낮고,⁴¹⁾ 이를 迅速히 處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水産業者는 自己生産의 漁獲物處理를 위한 市場知識이 缺乏되고 生産手段에 관해서도 市場知識이 薄弱할 뿐 아니라 水産資金이 缺乏되어 있었으며 生産者는 이와 같은 市場에 대한 知識과 經驗 및 資力의 不足 등과 같은 經濟的 不利性으로 인하여 客主에 대한 依存도가 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水産業이 前期的 商業資本支配의 가장 典型的인 好地盤이 되었다. 이리하여 客主는 그들이 寄生할 수 있는 好適한 基盤을 漁業에서 發見하고 그들은 漁業經營規模가 零細한 生産者를 相對로 하여 水産物流通過程에서 水産業者의 剩餘生産物을 모조리 收奪하였다.

前期的 商業資本의 水産業者收奪은 高利貸資本의 機能과 結合하여 強力히 遂行되었다. 前期的 商業資本存在의 一形態는 高利貸資本인 것이며. 高利貸資本은 前期的 商業資本과 그 存在의 基盤 및 利害를 共通히 하고 大部分의 境遇 그와 同一個別資本의 一側面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前期的 商業資本이 그의 價値增殖을 보다 完全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高利貸를 兼하는 것이다.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商業資本家로서의 客主도 高利貸를 兼하여 水産業者를 收奪하였다고 하겠다.

客主가 이와 같은 機能을 다하는데 必要한 資本을 提供한 層은 「商人의 營業資本은 한 모양으로 律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客主는 地方의 兩班에게 融通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⁴²⁾고 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 特權階級的 存在이었던 官吏 및 退職官吏인 兩班, 즉 地方封建貴族群이고 大土地所有者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國家自體가 客主를 通하여 高利貸를 行하였다는 事實이다. 이는 李朝封建社會가 「國王을 主席으로 하는 피라미트型的 李朝封建社會의 官

39) 上同, p.186.

40) 上同.

41) 農業에 있어서는 主食·副食·依類 등 自然도가 높으므로 市場經濟의 依存도가 낮는데 比하여 漁業은 生産手段에서 生活資料에 이르기까지 이를 他人의 生産物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即 市場經濟의 依存도가 越等히 높으며 따라서 貨幣經濟化의 程度 또는 現金支出의 比率이 높다. 日本은 이 比率이 農業이 65%인데 反하여 漁業은 95%에 達하고 있다(近藤康男, 「日本漁業의 經濟構造」, 1956, p.284).

42) 西尾要太郎, 「鮮南發達史」, 1913, p.393.

人階層에 의한 高利貸付業이었던 것]⁴³⁾이라는 事實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아롱은 官吏가 在職中 그 特權을 濫用하여 苛酷한 誅求를 敢行하였음은 古今을 通하여 社會的 惡德과 混亂의 源泉이 되었거니와 이것을 史實에 徵하여 보면 丁茶山 「試論稅米一事，該納戶曹者四千石，則本邑之徵於民者，遠過萬石，出於民書罰輸於公書，其沃田饒戶稻米流脂，朝令而夕輸之者，吏皆作姦，或以隱結收之，或以宮結除之，或以邸價收之，或以僞災除之，或以錢受之，或以米受之，已自初秋雲委川輸，以了倫取之額，悉歸秋棗，於是聚其殘米，以充四千石，王稅之額凡充於王稅者，皆闔家沒死，流亡絕戶，鰥寡孤獨，痲癢殘殊疾陳田廢畜，蒿萊磽确，剝膚髓髓，無可奈何之類耳」⁴⁴⁾하여 그 度가 極甚하였음을 概嘆하고, 이리하여 收斂된 財産은 高利貸資本으로 利用되어 그 活用處를 客主에게서 發見하였음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封建支配層의 誅求苛劓이 苛酷한 것이었는가는 여기서 論外로 하더라도 그들은 數多한 經濟外的 強制에 의하여 收奪한 剩餘生産物을 高利貸資本으로 轉換함으로써 第2次的인 收奪을 위하여 高利貸資本으로서 投下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朝鮮時代에 있어서 貪官汚吏의 彌滿, 「社還米制度」⁴⁵⁾, 「戶給屯田之法」⁴⁶⁾등으로 말미암아 百姓은 極度로 疲弊하고 그 위에 內憂外患에 의하여 國家財政의 不足을 補填하기 위하여 國家自體가 客主를 通하여 高利貸를 行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되어 客主는 封建國家의 絶對的인 支配機構下에서 獨占的 活動이 保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官權과 結託하여 漁獲物 販賣權을 獨占하는 傾向도 많았다. 高利貸外에 公的 機關에 의한 高利貸도 金融面에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었으므로 無資力한 水産業者를 經營함에 있어서 私債 뿐만 아니라 公債에 대한 依存도가 컸다.

韓末 自給自足的 自然經濟를 地盤으로 하는 單純商品生産의 幼稚한 生産樣式에 照應하는 貨幣經濟의 萌芽가 씩트게 됨에 따라 高利貸資本은 보다 廣範한 活躍舞臺를 發見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官僚階層의 高利貸의 收奪은 一層 積極化하는 一面, 商業資本을 代表하는 客主의 高利貸는 小生産者에 君臨하여 支配的인 地位를 確立한다. 流通經濟의 發達이 아직도 幼稚한 段階에 있었던 當時 商業은 金融과 密接한 關係에 있었다. 이리하여 水産物流通過程에 있어서 支配的인 勢力을 지니고 있었던 客主는 同時에 水産業에 있어서 高利貸를 통한 支配的인 金融業者로서 登場하였던 것이다.

아롱은 韓末의 事情이 「全鮮에 金融機關이 不備하여 金利가 높았으므로 商人이 商業을 걸어치우고 貸金業者나 客主로 되는 者가 많이 났다」⁴⁷⁾고 한 것만 보아도 水産業에 있어서의 客主資本의 比重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43) 崔虎鎮, 「前揭書」, p. 145.

44) 崔虎鎮, 「近代韓國經濟史研究」, 1932, p. 225.

45)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 飢饉 或은 軍亂 등 有事時를 위하여 施行된 制度로서 官穀을 貯蓄하여 飢饉 或은 亂時에 「賑貸」 또는 「賑貸」라 하여 貧民에게 貸與하고 秋收期에 一定한 利息을 添加시켜 還收하는 것인데 이는 國家의 農民에 대한 하나의 高利貸行爲라 할 수 있다.

46) 이것은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 國家가 軍費 등 時急한 經費를 調達하거나 이에 對備하기 爲하여 農家에 秋種을 貸與하여 秋收期에 5倍의 新穀을 請求하였다. 現物貸付의 가장 苛酷한 例의 하나이나 이는 國家에 의한 掠奪이라 할 수 있다.

47) 崔虎鎮, 「前揭書」, p. 237.

V. 漁業資金前貸 및 仕込制度

客主는 自己資本의 價値增殖過程을 보다 完全히 하기 위해서는 高利貸資本의 機能과 結合하여 水産業者의 剩餘生産物의 一部 뿐만 아니라 그 全部 때로는 必要生産物까지 收奪하였고 나아가서 이들은 高利貸資本의 機能을 單純히 高利貸資本으로서 그치지 않고 前貸 乃至 仕込까지 하였다.

客主의 前貸制度에 관해서 西洋史에 있어서는 12世紀 後半에 展開되고 13世紀에는 滿開狀態에 到達하였으며 商業都市와 14世紀의 金銀革命(또는 *Zunftkampf*)은 密接한 關係를 갖게 되었다. 絶對王制末期에 매뉴팩처의 廣範한 發展에 이르러서야 強大했던 勢力이 弱화된 것으로 보이고 産業革命으로서 그 歴史的 機能이 喪失된 것이다.⁴⁸⁾ 이에 反하여 韓國에서는 이 制度가 朝鮮最後期인 韓末에 이르러서는 더욱 盛行하였다. 그러면 韓末에 있어서 客主가 零細한 水産業者에게 現金, 漁具 및 日用品의 形態로 水産資金을 先貸하고 그 漁獲物을 直接 引受하여 그들을 市場으로부터 遮斷시키고 同時에 自己에게 隸屬시켜 水産業者를 收奪하는 事例를 먼저 東海의 明太漁業에서 보면, 「客主가 漁業者에게 日用品과 生産手段을 仕込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現金으로 換算하여 그 위에 時價보다 一割内外의 利息을 받았다. 返還方法에는 每年 12月末 内最低市場價格으로서 貸金과 清算하는 것을 條件으로 揚陸과 같이 乾燥 및 製造를 客主에게 一任하였다. 이리하여 實際 計算時에는 「加算」이라 稱하여 明太 한마리에 대해서 얼마씩의 割引을 하여 總計算額이 貸付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殘額을 現金으로 漁業者에게 返還하는 方法을 取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萬一 不漁 등으로 말미암아 回收額에 未達일 境遇에는 元利金의 返還殘額을 다시 元金으로 計算해서 그 翌年에 다시 資金을 貸付했다. 이런 境遇 新債權은 舊債權에 대하여 恒常 優先權이 있으며 新債를 먼저 返還하지 않으면 舊債를 返還할 수 없으므로 漁業者를 더욱 더 困難에 빠뜨리게 하는 結果가 되었다」.⁴⁹⁾ 또 明太漁業에서 「經營資金의 7,8割을 資本主로부터 融通하였다. 이 融資에 대하여 相當한 資産을 갖는 者 또는 信用있는 者는 何等의 問題가 없었다. 그러나 漁業者의 大部分은 無資産者이므로 資本主는 警戒하여 極端的인 制限을 加했다. 卽 現金 以外の 日用品 등을 給與하는 境遇는 市價보다 一割内外 高價이고, 또한 이를 現金으로 換算하여 利子を 부쳤다. 利子は 月三分 必要에 따라 더욱 擔保를 要求했다. 實際 計算時에는 「加計」라 하여 太駄(二千尾)에 대하여 若干 價格을 切下하며 計算額이 貸金を 超過할 境遇에는 殘額을 現金으로 返却하는 方法을 採擇하였다. 그러므로 漁業者는 그 漁獲物을 自由로히 處分할 수가 없고 事實은 財主 卽 漁業者인 存在였다」.⁵⁰⁾ 또한 「營業主로서 萬若 資金이 缺乏될 때는 他에서 供給받는다. 이 境遇에는 大概 資本主는 營業主를 同伴하여 漁港에 來到하여 漁獲物을 自己가 買收한다. 貸與에는 1個月 3分の 利子を 부치고 漁獲物 買收期에는 三百文 乃至 五百文을 割引하여 去來」⁵¹⁾하였다고 한다.

48) 林仁榮, 「前揭書」, p. 28.

49)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1952, pp. 113-114.

50) 朴九秉, 「前揭書」, p. 188.

51) 水協中央會, 「前揭書」, p. 184.

西海岸의 조기漁業의 境遇는 그 經營資金의 大部分을 客主로부터 借用하여 月利 4,5分을 支拂했으며 그 返濟는 現金拂과 現物拂의 2種이 있었고, 特히 現物拂은 魚價를 割引하여 支拂하였던 것이다.⁵²⁾ 또 西海岸을 中心한 沿岸 各處에 發達하였던 出買船은 蒐集漁獲物을 客主와 特約하는 것을 條件으로 客主로부터 資金을 融通하는 同時에 漁業者에게는 前貸 및 仕込의 形式으로 資金을 貸付하여 漁獲物을 獨占의으로 買收하였다. 이 境遇에 客主의 「仕込利息은 옛날에는 最高 2割 4分 普通 2割 2分 別途로 委託販賣手數料 1割을 徵收하고 더구나 魚價는 特히 割引하여 去來했음으로 客主의 利益은 二重, 三重이었다」.⁵³⁾

그리고 南海의 境遇 「鎮海灣의 大口, 멸치 등은 오늘날과 같이 客主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고, 客主들은 漁業者와 前貸 및 仕込關係로서 高利 및 商業利潤을 抽出함과 더불어 그 委託에 있어서도 賣買하는 雙方에서 口錢을 徵收했던 것이다」.⁵⁴⁾ 이와 같이 客主는 前貸 또는 仕込을 通하여 水産物流通過程을 掌握함으로써 水産業者를 苛酷하게 收奪하였을 뿐만 아니라 漁業生産에 있어서는 危險性, 不安定性, 不確實性 등이 隨伴된다는 漁業의 産業의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高利貸付業者는 豫想損失을 考慮하여 水産業者에게 보다 不利한 條件의 設定을 強要했던 것이다. 薄資無産의 水産業者는 漁業生産을 繼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不利한 條件도 甘受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一旦 不漁가 繼續되는 날이면 水産業者는 高利貸의 掌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와 같은 凶漁는 더러는 豐漁로 挽回될 수 있는 機會라도 있으나 漁業이 보다 低度의 發展段階에 머물러 있을 때는 漁船, 漁具 등이 破損, 또는 流失되는 일이 一層 頻發하여 水産業은 큰 打擊을 받게 되어 結局은 債務奴隸化하거나 이에 가까운 地位로 轉落하여 縮小再生産마저 再開하기 困難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⁵⁵⁾

以上の 몇가지 例를 前貸 또는 仕込形態의 高利貸를 통한 客主의 收奪이 如何히 苛酷하였는 가를 들어내고 있다. 여기에서 水産業者가 現金借用을 할 때에는 반드시 先取利子를 떼고 貸付하며 借用期限前의 返債에도 利子金額을 負課시켰다. 返還 不能時에는 반드시 年複利였다 하니 前貸資本의 高利的 收奪性이 얼마나 甚하였던가는 充分히 斟酌할 수 있다. 또한 月 3分の 利子率은 決코 高率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表面上으로 나타난 利子率보다 漁獲物買收時의 價格割引, 現物仕込時의 高價의 價格評價, 元利金 徵收方法의 恣意性 등에서 實質的으로 客主가 取得하는 利子部分은 莫大하였던 것으로 본다.

高利貸資本의 利子抽出은 貨幣를 必要로 하는 者의 抵抗力인 支拂能力以外에는 아무런 制限을 모르는 高利貸付가 되었던 것이다. 特히 水産業에 있어서는 生産의 不安全性과 無資力한 水産業者의 借金返濟에 대한 不確實性으로 말미암아 高利貸付業者는 보다 큰 豫想損失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資金融通에 있어서 水産業者에게 보다 不利한 諸條件의 設定을 強要한 것이라 하겠다.

52) 李鍾禮, 「我國水産業의 流通構造에 관한 研究」, 海務, 21卷, 1958, pp.15-16.

53) 上同.

54) 上同, pp.16-17.

55) 水協中央會, 「前掲書」, pp.186-187.

VI. 結 言

開港以後 近代的 金融機關이 設立되었으나 水産業者는 이들의 融資對象에서 거의 疏外되어 이른바 客主에 依存할 道理밖에 없었고, 한편 客主는 水産業部門에서 高利貸資本으로 하여금 金融的 主役을 擔當한 것이 韓末의 水産金融實情이었다.

그런데 客主는 李朝封建財政의 不足部分을 補填키 위해 李朝封建國家와 野合하고, 한편 그들로부터 絶對的인 庇護를 받았으며, 또한 李朝封建國家의 公的權力 또는 權勢家와 結託하여 商業에 있어서 獨占的 活動의 保障도 받았다. 특히 客主는 零細한 水産業者를 對象으로 經濟外的 強制를 통해 非法則的 또는 掠奪的 利潤作出과 高利貸에 의한 收奪과 함께 漁業生産物의 剩餘部分 나아가서는 必要部分까지 收奪함으로써 水産業者를 支配, 君臨하였다. 게다가 客主는 水産業者에게 前貸 및 仕込을 通하여 二重, 三重으로 收奪함으로써 漁業生産力의 發展은 極度로 阻止되었고 더구나 漁獲販路의 狹隘性은 漁業生産力發展의 積極的인 契機를 妨害하였다.

이리하여 客主는 水産業分野에서 鞏固한 活動基盤을 確保하면서 威勢를 떨쳤다. 이같은 事實은 韓末에 豊富한 水産資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限定된 數種目的 漁業이 겨우 命脈을 維持할 뿐 産業으로서의 水産業이 獨立化의 길이 遮斷된 채 農業의 陰影的인 存在로서의 意義밖에 없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다.

如何間 水産業部門에서 高利貸資本으로 하여금 金融的 主役을 擔當한 客主는 韓末을 고비로 하여 그 活動이 絶頂에 達하였으나, 1914年「朝鮮總督府令」第135號에 의해 市場規則이 發布됨으로써 客主의 舊來的 機能은 變貌하기 始作하였다. 즉 前期的 形態의 客主와 近代的 形態의 魚市場과의 發展過程은 歷史過程에서 逆比例關係로 進行되는 것이므로 近代的 漁業의 發達과 魚市場은 漸次 發展되어 갔고, 反面에 客主는 차츰 水産業界에서 衰退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Summary

A Study on the Fisheries Financing of the Late Yi Dynasty

Kyoung-Ho Kim

Though modern banking organs were established in Korea with the Kanghai Treaty as a momentum, the benefit of financing at that time, which was mainly given to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and traders, was extremely limited to the fishermen.

The fishermen who were out of favor with the benefit of financing of modern banking organs were forced to rely on high interest loans, a category of usury capital, issued by the middlemen (the Kaekju) who lent them the deficit of their necessary funds. The fact was that in the field of fisheries the middlemen who issued usury capital played the leading part in fisheries financing of the Late Yi Dynasty.

The middlemen, however, squeezed a part or all of surplus products and on occasion even necessary products out of the fishermen by means of outward compulsion of economy. Moreover they put the fishermen further in trouble by putting-out system. In order to keep on with the production of aquatic products, the fishermen with little capital and no property established the antinomic relations with the middlemen whose disadvantageous terms they were inevitably to accept.

Thus the middlemen who did business with the fishermen exercised their authority over them, securing a strong activity founda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But the traditional form of the Kaekju was transformed and gradually declined in the field of fisheries according as the market rules were proclaimed in 1914.